

입출금통장 상품설명서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서는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사이다뱅킹서비스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약관」, 「입출금통장특약」이 적용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를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계약서, 상품설명서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 **상품명** : 입출금통장
- **상품특징**
 -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 매월 이자 지급에 따른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상품 주요내용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세전, 연%)

가입대상	개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이상 내국인)
예금종류	입출금이자유로운보통예금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적용금리(이자율)	• 입출금통장 매일의 최종예금 잔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

	<table border="1"> <tr> <td>1억원 이하</td> <td>1억원 초과</td> </tr> <tr> <td>조회 기준일 시점 고시된 이율 적용</td> <td>연0.2%</td> </tr> </table>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조회 기준일 시점 고시된 이율 적용	연0.2%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조회 기준일 시점 고시된 이율 적용	연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월 1일에 이자를 지급				
이자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계산기간 : 최초예금일 또는 전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 매월의 말일까지 ● 이자계산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별이자 : 매일의 최종잔액 × 약정금리* / 365 2) 지급이자 : 이자계산 기간의 일별이자 합산(매일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 약정금리 : 조회기준일 시점에 고시된 이율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3. 상품 기타내용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한사항	담보제공	불가능 (비대면 전용상품)
	질권설정	불가능 (비대면 전용상품)
	지급제한	계좌에 법적지급제한,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되거나 입·출금정지,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잔액의 출금, 입금 및 해지가 제한됩니다.
	기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거래중지계좌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예금은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재개방법 :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신청 가능 	

휴면예금	이차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연된 이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해지	이 상품은 비대면전용상품으로 영업점에서 가입 및 해지가 불가능하며,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서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4. 한도제한계좌 안내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전 또는 자동해제 기준 충족 전까지 아래와 같이 1회,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시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자동해제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거래한도

구분		한도제한계좌	일반계좌
사이다뱅크	이체한도	1회 최대 1백만원 / 1일 최대 3백만원	1회 최대 1억원 / 1일 최대 5억원(OTP기준)
ATM	이체한도	1회 최대 70만원 / 1일 최대 70만원	1회 최대 6백만원 / 1일 최대 3천만원
	출금한도		1회 최대 1백만원 / 1일 최대 6백만원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한도제한계좌 해제 증빙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기타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예적금, 대출 금융거래 등 당행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거래목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44-52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idabank.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다뱅크앱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기 1대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제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거로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SBI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_____ (서명/인)

#. 금융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질권설정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압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을 말합니다.